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92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3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권고 근거 마련	14
3.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
3. 회부연월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과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직접구매 해외제품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3조제4호·제5호 신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의4 신설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 ③ 제품안전정보망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직접구매 해외제품</u> ”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물(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 <u>해외통신판매중개자</u> ”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신설>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u>안전성조사 결과</u>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u>안전성조사</u>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	④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9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u> ⑤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 -----<u>안전성조사 결과</u>,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 -----. ② ----- -----<u>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u>----- -----

현행	개정안
리 알려야 한다.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 -----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1.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 -----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 -----권고, 제10조의2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
2의2.·2의3. (생략)	2의2.·2의3.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제품안전</u> 에 관한 정보	3. ----- <u>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 제품 안전</u> 에-----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확대¹⁾²⁾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국내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1)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 : ('21년) 5조 2,574억원 → ('22년) 5조 9,454억원 → ('23년) 6조 6,819억원 → ('24년) 7조 9,583억원(잠정치)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2) 특히,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
-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수('24.3월) : 쿠팡(3,086만), 알리(887만), 테무(829만), 11번가(740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위해 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24.5.13.)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성조사 현황]

조사기관	조사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 448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2회) - 85개 위해제품 발견
관세청	▶ 310개 어린이제품 조사(2회) - 55개 위해제품 발견 ▶ 454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2회) - 139개 위해제품 발견
환경부	▶ 415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1회) - 49개 위해제품 발견
소비자원	▶ 137개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5회) - 64개 위해제품 발견 ▶ 구매대행 27개 어린이제품(완구) 조사(1회) - 10개 위해제품 발견
서울시	▶ 324개 어린이 제품 등 조사(18회) - 98개 위해제품 발견
경기도	▶ 70개 어린이제품 등 조사(1회) - 37개 위해제품 발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나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³⁾,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3)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의 권고 또는 수거등의 명령을4),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수 있음⁵⁾.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⁶⁾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해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생략)

6) 수입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 법령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개정안 제9조의4제1항 후단 및 제4항은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⁷⁾에서 관세청장과 협업부처의 합동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불필요하며,

7)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현행법 제9조의3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대상 범위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⁸⁾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모든 안전성 우려 제품에 대해서 관세청에 요청하기만 하면 합동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안전성조사 요건 비교]

시중 유통 제품 (현행법 제9조제1항)	수입제품 (현행법 제9조의3)	직접구매 해외제품 (개정안 제9조의4제1항)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8)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다음으로 제16조제1항제3호는 제품안전정보망에서 수집·제공하는 정보로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제품’의 정의9)에 ‘직접구매 해외제품’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6조제1

9) 현행법 제3조제1호는 ‘제품’을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

항제3호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EU 등도 안전관리 법률을 개정하여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리 국내외 사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의, 위해정보 게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등 직구 식품 규제 포함('22.2.18. 시행)
- (일본) 「소비생활용품안전법」 개정('24.6.26. 공포, 9개월 이내 시행)
 - 수입 행위에 해외직구 반입 행위 포함,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게 판매자의 위해방지 조치, 사고 정보 제공, 사고 발생 통지 등의 협력 책무 신설
- (EU) 「일반제품안전규칙(regulation)」 제정('23.5.23. 공포, '24.12.13. 적용)
 - 해외사업자에 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표시, 대리인 지정 의무 신설, 온라인 플랫폼에게 위험제품 제거 등 명령 이행, 위험제품 탐지 등을 위한 자율적 조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로 정의하고 있음.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권고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②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등 조치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권고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현행	개정안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u>사업자</u>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u>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u>해외통신판매중개자</u>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u>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 ----- ----- ----- -----<u>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u>----- ----- ----- ----- ----- ----- -----. ② ----- -----

현행	개정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권고-----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u>사업자</u> 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u>사업자</u> 및 <u>해외통신판매중개자</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의 삭제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그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삭제 등 조치를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도 불복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0조의2제2항은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권고 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 등 권고를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5조의4 신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u>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 ② <u>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현행	개정안
제27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u>가 설립한 국내 법인</u>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u>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u> ③ <u>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물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u>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 2. <u>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u> ④ <u>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⑤ <u>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제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u>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u>지정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현행법은 국내의 제품 제조·유통사업자¹⁰⁾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함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제품안전관리 및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등 조치 권고의 이행, 조치 결과의 보고 및 조치 권고의 해제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조치 결과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

10)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15조의4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1호의 권고의 이행 및 보고와는 달리 제1항제2호의 권고 해제의 신청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를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7조제2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안 제1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법례¹¹⁾는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 수준을 개정안과 같이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11) 23쪽 표 참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지정요건을 위반한 것은 위반행위의 경중이 다르므로 처벌수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유통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타 입법례]

구 분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기준 이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일정 기준 이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미지정 시 제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처

02)6788-5464